

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처리기간 30일
신청기관	기관 또는 단체명		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
	주소		(전화번호 :)
시범사업 명칭			
시범사업 개 요			

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제9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제8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업 계획서 2. 공공기관이 시범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·인력 등에 관한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